

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9. 10(화) 14:00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의회사무국 소관)



의회운영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74호
- 나. 제출자 : 장규권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2. 제안이유

금천구의회 입법·법률 고문의 정원을 3인으로 확대 운영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입법·법률 고문의 정원 확대(안 제3조)
 - 1) 당초 : 2인 이내 ⇒ 변경 : 3인 이내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7,920천 원(220,000원×3명×12개월) 소요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원) 입법·법률고문의 정 원은 <u>2인</u> 이내로 한다.	제3조(정원) ----- --- <u>3인</u> -----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질적으로 전문화 및 고도화되고, 양적으로도 확대되는 의정 환경에 따른 입법·법률자문 수요를 고려해 정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의 수를 “2인”에서 “3인”으로 늘리려는 것임(안 제3조).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을 보면, 지방의회의 의무로 “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
 - 의회 입법·법률고문 제도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, 고문의 수와 관련 제한을 두는 상위법령은 없음.

※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수 현황(2024. 8월 기준)

- 7명 : 1개구(송파구)
- 6명 : 1개구(중구)
- 5명 : 2개구(강북구, 강동구)
- 4명 : 1개구(양천구)
- 3명 : 15개구
 - ▶ 강남구, 강서구, 광진구, 구로구, 도봉구, 동작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서초구, 성북구, 영등포구, 용산구, 은평구, 종로구, 중랑구
- 2명 : 4개구(금천구, 관악구, 노원구, 성동구)
- 관련 조례 없음 : 1개구(동대문구)

-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,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및 내용 역시 복잡·다양해지고 있으며, 특히 금천구의 분야별 입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대응이 필요한 상황임.
- 이에, 입법기관인 의회에서의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고,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대비와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법·법률고문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.
- 다만, 입법·법률고문 위촉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,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본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.
-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다양화·복잡화 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, 우리구의회의 입법·법률고문 확대운영을 통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,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현행 조례 1부.

현행 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

(제정) 2011.03.18 조례 제66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입법·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① 입법고문은 다음 각호사항을 처리한다.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
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.
3. 법률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. 다만, 쟁송사항에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.
4.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·처리,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

② 입법고문은 다음 각호사항을 처리한다.

1.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
2.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으로부터 수입 받은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
3.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안

③ 입법·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입법·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조(정원)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.

제4조(위촉) ① 입법·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교수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.

② 입법·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.

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별지

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5조(해촉) 의장은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3. 수임사건의 복대리,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
4.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5. 입법·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
제6조(임기)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재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)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·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(고문료 등) ①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고문료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」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(연1회 1월분).

1.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
2.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

④ 입법·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」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

부 칙(제663호, 2011.3.18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